

지정번호: 제 호

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소 재 지:

4. 공시 분야:

5. 유효기간:

6. 최초 지정일: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2항·제3항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6조제4항·제77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